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14조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7. 7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, 제29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연번 | 성명 | 생년월일 | 서류의 명칭 | 서류의 주요 내용 | | 송달불능사유 | 주소 |
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처분사유 | 처분내용 | | |
| 1 | 김*은 | 97.09.18. |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|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| 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| 폐문부재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**길 **, (이하생략) |

4. 공고기간: 2026. 7. 7. ~ 2026. 7. 21. (15일)

5.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효진(Tel. 041-620-959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